

# 이준석 등 세월호 선원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

공보관(전화 : 3480-1451)

대법원(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, 주심 대법관 김소영)은 2015. 11. 12. 피고인 이준석 등의 살인 등 사건(2015도6809)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

## 1. 판결 요약

순번	피고인	지위	원심 판단			대법원
			유죄 부분	무죄 부분	선고형	
①	이준석(69세)	선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살인·살인미수<sup>1)</sup></li> <li>특정범죄가중법 위반<sup>2)</sup></li> <li>업무상과실선박매몰</li> <li>수난구호법 위반</li> <li>선원법 위반</li> <li>해양환경관리법 위반</li> </ul>		무기징역	상고기각
②	강원식(43세)	1등 항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정범죄가중법 위반</li> <li>업무상과실 선박매몰</li> </ul>	살인·살인미수	12년	
③	김영호(47세)	2등 항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기치사·치상</li> <li>수난구호법 위반</li> </ul>	살인·살인미수	7년	
④	박한결(여26세)	3등 항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기치사·치상</li> <li>수난구호법 위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정범죄가중법 위반</li> <li>업무상과실 선박매몰</li> <li>해양환경관리법 위반</li> </ul>	5년	
⑤	조준기(56세)	조타수				
⑥	신정훈(34세)	1등 항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기치사·치상</li> <li>수난구호법 위반</li> </ul>		1년6월	
⑦	박경남(60세)	조타수			2년	
⑧	오용석(58세)				2년	
⑨	박기호(54세)	기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기치사·치상</li> <li>수난구호법 위반</li> </ul>	살인·살인미수	10년	
⑩	손지태(58세)	1등 기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기치사·치상</li> <li>수난구호법 위반</li> </ul>		3년	
⑪	이수진(여26세)	3등 기관사			3년	
⑫	전영준(62세)	조기장			1년6월	
⑬	이영재(57세)	조기수			3년	
⑭	박성용(60세)				3년	
⑮	김규찬(62세)				3년	

주요 쟁점	유죄	무죄
① 피고인 이준석의 살인·살인미수죄	전원일치	
② 피고인 박기호의 살인·살인미수죄		전원일치
③ 피고인 강원식·김영호의 살인·살인미수죄	박보영, 김소영 박상옥	양승태, 이인복 이상훈, 김용덕 고영한, 김창석 김신, 조희대 권순일, 이기택
④ 피고인들의 수난구호법 위반 피고인 이준석·강원식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	양승태, 이인복 박보영, 고영한 김창석, 김소영 권순일, 박상옥	이상훈, 김용덕 김신, 조희대 이기택
⑤ 피고인 박한결·조준기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, 특정범죄가중법 위반		전원일치

## 2.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

가. 살인·살인미수 → 피고인 이준석·강원식·김영호·박기호

### (1) 공소사실의 요지

- 위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, 승객 등이 안내방송을 믿고 세월호의 선내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가 더 기울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, 피고인 박기호는 부상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익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, 어떠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각자 퇴선함으로써, **304명**을 익사하게 하여 **살해**하고, **152명**이 사망할 것을 용인하면서 퇴선하였으나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되는 바람에 사망하지 아니함

### (2) 하급심의 판단

- 제1심 : 피고인 박기호의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한 살인(유죄), 나머지 전부(무죄)
- 항소심 : 피고인 이준석(유죄), 나머지 전부(무죄)

1) 피해자 중 실종자 1명은 제외. 나머지 피고인들의 유기치사 혐의도 동일함  
2) 실종자 1명에 한함

### (3) 쟁점

- ① **피고인 이준석**이 퇴선 전에 퇴선방송 지시를 하였는지
- ② 피고인 이준석의 **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**
- ③ 피고인 이준석에게 **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**
- ④ **피고인 강원식 · 김영호 · 박기호**가 **살인의 고의로 피고인 이준석의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**

### (4) 대법원의 판단

(가) **피고인 이준석의 살인 · 살인미수 → 유죄 (전원일치)**

- ① 쟁점 → 퇴선방송 지시 하지 않았음
- ② 쟁점 →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음
  - ㉠ 선박의 총책임자인 선장으로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음
  - ㉡ 자신의 선내 대기 명령에 따라 선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승객 등에 대한 대피 ·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탈출 · 생존이 가능했음
  - ㉢ 조타실 내 장비이용 등 쉬운 방법만으로도 대피 · 퇴선명령은 충분히 가능했음
  - ㉣ 퇴선 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등의 탈출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
  - ㉤ 이러한 행태는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음
- ③ 쟁점 →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
  - ㉠ 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 등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, 구조세력의 퇴선요청마저 묵살하고 승객 등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함
  - ㉡ 이는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
  - ㉢ 퇴선 직전이라도 승객 등에게 퇴선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마저도 하지 않았고, 퇴선 후에도 해경에게 선내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하였음

※ '구조조치' 또는 '구조의무' 위반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최초의 판시임

- 그동안 "부작위에 의한 살인"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었음
- "부작위에 의한 살인"이 인정된 사례도 대부분 '계획적인 범죄'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것임

①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도2024 판결

- 중학생인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여 포박·감금한 후 수차 그 방을 출입하던 중 피해자가 탈진상태에 있어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병원에 옮기고 자수할 것인가, 그대로 두어 피해자가 죽으면 시체를 처리하고 범행을 계속할 것인가, 아니면 스스로 자살할 것인가 등을 두루 고민하다가 그대로 나와 학교에 갔다가 와 보니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 → 피해자가 탈진상태에 빠진 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

②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도2951 판결

- 조카인 피해자(10세)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사안

③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도10724 판결

- 피해자(여, 46세)와 밤낚시를 하던 중 낚시대 받침틀을 좌대 고무 패킹에 끼웠다가 다시 빼다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려 피해자를 깊이 2.5미터에 달하는 낚시터에 빠지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익사하게 한 사안임

(나) 피고인 박기호의 살인·살인미수 → 무죄 (전원일치)

○ ④ 쟁점 →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

- ㉠ 선장의 지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임무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, 다른 승무원으로 쉽게 대체 가능함
- ㉡ 선장과 같이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- ㉢ 선장의 전문적 판단과 지휘명령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결과책임이 따를 수 있는 퇴선조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여야 할 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

- ㉔ 퇴선 당시 부상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

**(다) 피고인 강원식 · 김영호의 살인 · 살인미수 → 무죄 (다수의견, 10인)**

○ **㉔ 쟁점 →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**

- ㉔ 선장의 지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임무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, 다른 승무원으로 쉽게 대체 가능함
- ㉔ 선장과 같이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- ㉔ 선장의 전문적 판단과 지휘명령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결과책임이 따를 수 있는 퇴선조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여야 할 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

○ **소수의견 → 유죄 (대법관 박보영 · 김소영 · 박상옥, 3인)**

- 1·2등 항해사의 지위·의무에 비추어 선장을 대행하여 구조조치를 지휘할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
- 구조조치 불이행과 퇴선행위는 피고인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승객 등의 사망 결과의 발생을 인식·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되었음

**나. 수난구호법 위반(피고인들)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피고인 이준석 · 강원식) ⇨ 유죄**

**(1) 공소사실의 요지**

- **(수난구호법 위반)** 피고인들은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임에도, 조난당한 승객들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등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
- **(특정범죄가중법 위반)** 피고인 이준석 · 강원식은<sup>3)</sup>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였음에도, 조난된 승객 등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승객 등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

**(2) 하급심의 판단 : 1심(무죄) → 항소심(유죄)**

3) 피고인 이준석에 대하여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실종자 1명에 한함

**(3) 대법원의 판단 → 유죄 (다수의견, 8인)**

-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범행주체인 '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·승무원'에 '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·승무원'도 포함
  - ㉓ '조난사고'는 외부적 원인 외 화재, 기관고장 등 선박 자체의 내부적 원인으로 도 발생할 수 있음
  - ㉔ 조난된 선박의 선장·승무원도 구조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수난구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
- **소수의견 → 무죄 (대법관 이상훈·김용덕·김신·조희대·이기택, 5인)**
  - 규정 형식 및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에 비추어, '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'은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음

**다.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피고인 박한결·조준기) ⇨ 무죄 (전원일치)**

**(1) 공소사실의 요지**

- **(업무상과실 선박매몰)**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준석·강원식과 공동하여, 피고인 조준기의 조타 미숙, 피고인 박한결의 지휘감독 잘못 등 업무상과실로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게 함
- **(특정범죄가중법 위반)**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준석·강원식과 공동하여, 업무상과실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였음에도 대피 및 퇴선 등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승객 등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

**(2) 하급심의 판단**

- 제1심 : **업무상과실 선박매몰(유죄), 특정범죄가중법 위반(무죄)**
- 항소심 : **모두 무죄**

**(3) 쟁점** : 위 피고인들의 조타 및 지휘감독상 과실로 세월호가 침몰하였는지 여부

**(4) 대법원의 판단 → 무죄 (전원일치)**

- 사고 당시 세월호의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이상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

### 3. 이 판결의 의미

- **부작위에 의한 살인죄**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실제 살해행위를 하는 것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**강한 위법성이 있어야만 인정**될 수 있다고 하여 엄격하게 판단해 온 것이 **대법원 판례**의 입장이었음
- 그러나 이 사건에서 **선장 이준석**은, 승객 등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·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, 당시 상황에서 퇴선명령으로 승객이 세월호를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하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, 승객을 선실 내에 대기하도록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하는 등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였고, 이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살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**대법관 전원이 일치하여 살인죄를 인정**하였음
- 이 판결은 **구조조치** 또는 **구조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**로서, 선장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**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**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

※ 대법원 공보관실은 **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의 인터넷 주소(URL)**를 출입기자단에 제공할 예정입니다.

※ 참조 :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 판결 코너

<http://www.scourt.go.kr/supreme/news/NewsListAction2.work?gubun=4&type=5>